

2003년도 지방세정 운영방향

신 정 완

행정자치부 지방세제관

I. 머리말

금년도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는 뜻깊은 해이다. 그 어느때보다도 사회전반의 변화와 개혁이 가속화되는 등 활력과 역동성이 예상되고 있다.

더욱이 정부부문에서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 새 정부의 10대 국정과제의 하나로 제시된 만큼 지방자치에 많은 발전이 기대되며,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재정력의 확충방안도 다각도로 강구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지방자주재원의 근간인 지방세의 중요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커지고 있으며, 지방세의 확충은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하는 방안과 재산세·종합토지세 등 지방세 과표를 현실화하는 방안이 동시에 추진되어야 할 것이지만 특히 전자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지 않도록 합리적 재원배분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자치가 성숙되어 감에 따라 납세자의 조세에 대한 투명성과 다양한 납세 서비스에 대한 요구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고, 나아가 세정의 효율화와 형평과세의 실현은 물론 전자정부시대에 부응하는 편리한 지방세 납부시스템의 개발·보급의 필요성도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도 지방세정의 운영방향은 첫째, 지방세수 확충 및 세원관리 강화를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 둘째, 납세자의 권익보장 및 편익위주의 지방세정 운영 셋째, 지방세정의 정보화 및 다양한 납세편의시책의 발굴 넷째, 지방세정 운영의 전문성·능률성 제고 등 4대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Ⅱ. 2003 지방세정운영 방향

1. 지방세수 확충을 통한 자치재정 기반의 확립

가. 2003 지방세수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

금년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한 지방세 세입규모는 28조 8,162억원으로 전년도 당초 대비 15.7%, 최종 대비 3.6%가 증가한 규모이다. 이와 같은 지방세수 목표액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는 세원관리 취약분야의 수시점검, 세원관리부서와의 협조체계 강화, 지방세 과세자료의 D/B화 구축, 비과세·감면 등에 대한 사후관리 노력 강화, 불성실 신고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고질 체납자의 특별관리를 통한 지방세 체납액 징수활동 강화 등 지방세 세원의 체계적·과학적 관리노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각 시도별 지역경제상황 등 지방세 징수여건을 정밀분석하여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대책을 수립·시행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그 동안 미진한 사항으로 지적되어 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 확충노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치단체별로 현행 지방세법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지방세 탄력세율 운영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하겠으며, 각 자치단체별 지역특성에 맞는 신세원의 개발을 위해 자치단체 나름대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새 정부의 출범과 더불어 본격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의 도입문제,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문제도 중앙과 지방이 함께 추진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이를 추진하기 위한 공동의 협조 노력도 절실한 시기라고 보여진다.

나.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추진 및 합리적 운영

금년도에는 토지·건물·기타물건 등 지방세 과표운영 전반에 걸쳐 실태와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각 자치단체별 과표현실화 중·장기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과표 현실화를 본격 추진해 나가고자 한다.

과표는 행정세율이라고 불리울 만큼 납세자의 조세부담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결정고시된 과표가 시가변동 등 기타 사유로 불합리한 경우에는 즉시 변경고시하는 등 과표운영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취득세·등록세 토지과표의 경우 개별시지가의 100%로 적용하나 개별공시지가가 실거래가에 비해 현저히 불형평한 경우가 있어 토지과표 적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될 것이 예상되므로 개별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의 실태를 분석하여 매우 불합리한 것이 발견되면 지가산정부서와 협의하여 시정토록 하고, 시가표준액의 산출근거가 되는 개별공시지가가 위산(違算)·오기(誤記) 등에 의하여 명백하게 잘못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과세권자가 정정하여 합리적으로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종합토지세의 과표도 과표현실화의 실태 분석 등을 통하여 자치단체간·필지간 과표의 격차를 해소하여 과세형평성 유지에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건물과표의 경우 부동산투기 등 특정지역내의 국세청기준시가 3억원 초과 공동주택에 대한 차등가산율(4~30%) 적용 등 금년에 개선된 부분에 대한 적용을 철저함과 더불어 「건물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각종 지수·가감산율 등 적용상의 문제점을 사전에 도출하여 재산세의 부과전에 개선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기타물건 시가표준액의 경우 골프·콘도·종합체육시설이용 회원권 등 가격 등락이 심한 과세대상물건의 시가변동에 따른 가격조사와 시가표준액의 변경고시를 적기에 시행하여 납세자들의 불만해소와 신뢰받은 지방세정을 구현하여야 할 것이다.

다. 지방세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 추진

현년도 지방세 징수율은 매년 높아지고 있으나 과년도분은 징수율이 크게 개선되지 않는 추세에 있으므로 체납액의 효율적 정리를 위한 보다 과감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금년도에는 「현년도 징수율 97% 달성, 과년도 체납액 20% 이상 정리」를 목표로 지방세 체납액 징수를 강력하게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우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하는 『체납세 징수추진단』을 구성하여 체납액 징수활동을 실질적·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정기분 세목의 홍보 및 신고납부세목의 관련기관 안내강화 등 체납액의 발생예방을 위한 납기내 징수활동을 강화하여야 할 것

이다.

또한 고질·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확행, 관허사업 제한, 금융거래 신용불량자 등록, 상습체납자의 사법기관 고발, 고액체납자의 출국금지요청 등 각종 행정제재를 강화하고 이를 통해 「체납액은 끝까지 징수한다는 납세분위기를 조성」하여야 하겠으며 동시에 소액체납자에 대한 징수노력도 강화하여야 하겠다.

아울러 재산조회 등을 통하여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체납세에 대하여는 과감한 결손처분을 행하되 결손처분 이후 재산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조세채권을 확보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라. 지방세 세원관리 및 탈루·은닉세원 발굴노력 강화

지방세 세원관리와 탈루·은닉세원 발굴을 위하여는 지방세 과세대상의 일제정비, 지방세정의 정보화, 세무조사활동을 강화하고 비과세·감면자료의 일제조사 및 사후관리 등도 필요하다.

지방세 과세대상의 일제정비를 위하여 매년 지방세 과세대상을 주기적으로 조사하여 과세누락·탈루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정기분 세목은 과세기준일 이전에 과세누락, 비과세·감면대상여부, 소유자변동 등을 정확히 조사하여 과세에 반영하고, 신고납부 세목의 경우 매년 시도, 시군구별로 자체계획을 수립하여 조사하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외부

의 세원관리부서와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겠으며, 조사된 세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D/B화하는 등 전산관리체계를 구축하여 탈루되는 부분이 없도록 하여야 하겠다.

지방세 세무조사에 있어서는 신고납부 미이행·과소신고납부 등 누락세원의 포착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하여 지방세의 탈루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세무조사를 정밀하게 실시하되 세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납세자권리현장의 교부 등 친절하고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납세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하여야겠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대상은 금년도의 경우도 2003. 2월말까지 전년도의 지방세 감면사항에 대한 자료를 감면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아 정확한 비과세·감면현황을 관리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비과세·감면이 적정했는지 여부, 추정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하여 비과세·감면에 대한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마. 지방세 비리방지대책의 지속 추진

지방세 취약요소에 대하여 집중·반복적인 점검을 통하여 비리유발의 요인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지방세 수납검색체계의 완벽한 구축과 세무비리 발생소지가 있는 부분은 사전에 개선함으로써 비리예방적 세정시스템을 가동하고 감사 및 지도점검도 강화하여 비리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토록 해야 하겠다.

또한 정기감사시에 취약분야를 필수적인 감사항목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지역여건에 따라 차이가 있는 항목은 선택적인 감사항목으로 구분하여 실시토록 하며, 특히 새로운 유형의 비리발생이 가능한 분야에 대하여는 정밀감사를 실시하여 비리발생요인을 사전에 차단해야 할 것이다.

법원배당금·소액현금 등 현금수납분야는 집중적으로 관리되어야 하고, 등록세등 수납사항과 도축세·주민세 등 특별징수의 무자 등에 대한 주기적인 점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겠으며, 기타 비과세·감면사항 등도 반드시 사후관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2. 납세자 권리보호를 지향하는 지방세정 운영

가. 납세자 본위의 세정운영 기반 정착

현대의 조세행정은 종래 과세권자 위주에서 납세자 위주의 세정으로 변모되고 있으며 지방세에 있어서도 '97. 10. 1부터 『납세자권리현장』의 제정·시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납세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납세자가 제출한 각종서류 등은 이를 진실한 것으로 추정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과세정보의 비밀보호와 납세자의 권리 행사에 필요한 정보의 신속한 제공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지방세정이 운영되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질적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과세관청은 과세전에 과세예고 통지등에 따른 불복이 있는 경우 과세전 적부심사제도를 적극 활용토록 하고, 이의신청등 불복에 대비하여 불복사건에 대한 현장조사 등 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특히 금년부터는 지방세법령의 개정으로 지방세 구제업무처리시 준수법적 절차가 도입됨에 따라 이의신청인 또는 심사청구인의 관계서류 열람·의견진술 및 구술심의 신청 등의 절차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여 납세자 권리구제제도가 정착 발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 납세고지서 관리 강화

지방세 납세고지서는 납세의무의 확정효력의 문제 및 체납처분의 적법성과 직접 관련되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며 반드시 법령에 정한 내용 및 절차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납세고지서 납부 또는 납입할 금액·기한·장소, 연도와 세목, 세액의 산출근거 등 필수적 기재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 납세의무의 성립·확정 근거를 마련하고, 고지서 송달은 송달 입증책임 문제가 있으므로 직접교부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되 정확한 납세자의 주소지에 송달되도록 사전에 주민등록 DB와 연계하여 확인하는 등 주소지를 확인하여 송달하여야 하며, 주소 등이 불분명하여 공시송달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주민등록표·법인등기부 등에 의하여 전·출입지를 확인하여 공시송달을 하여야 할 것이다.

다. 과오납금 줄이기 및 환부업무처리 철저

지방세 부과·징수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줄여 공평과세 및 납세자 권익보호를 실현하고 나아가 과오납을 신속하게 환부하여 지방세정의 신뢰도를 제고해 나가야겠다.

과세권자의 이중과세·착오부과, 납세자의 착오납부 등에 의해 발생하는 과오납금을 세원관리의 전산화 및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의 구축을 통한 정확한 과세, 지방세 납세안내·홍보 등을 강화하여 과오납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확인된 과오납금에 대하여는 정확한 환부이자와 함께 신속하게 환부하여야 할 것이다.

과오납 사실을 모르는 납세자에 대하여는 미환부된 과오납금 찾아주기 등을 통해 신속하게 납세자에게 되돌려주고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경과된 미환부금은 적기에 세입처리를 확행해야 하겠다.

3. 납세자 편의시책의 지속 발굴·실천

가. 지방세정 정보화의 지속 추진

지방세정의 효율화·신속화와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방세정의 정보화 수준을 향상시키면서 관련 업무와의 통합성을 강화시켜 나가고자 한다.

지방세정의 정보화는 세원관리, 부과징수, 민원처리 등 지방세 업무전반에 대한 종합정보화체계를 구축하고, 외부행정망과의 연계를 통한 신속·정확한 세원관리체

계를 확립하며 안방에서 납부, 각종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one-stop 서비스 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해 나가야 하겠다.

나아가 지방세 과세자료의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을 완료하고, 지방세 전산코드를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며, 체납관리시스템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정비하고 세원·과세누락 방지를 위하여 지방세 전산 시스템을 지속 개선 운영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세 시스템과 시군구 행정종합 정보시스템의 주민·자동차·토지·건축망 등과 연계를 통하여 과세자료를 적기에 통보받을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또한 인터넷납부제, PC뱅킹, 폰뱅킹, 자동이체 납부제 등은 더욱 확대보급 될 수 있도록 추진함과 동시에 지방세 인터넷 고지제를 도입토록 추진하여 납세편의와 행정능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할 것이다.

나. 지방세 민원의 적극 처리

지방세 관련 민원은 주민의 재산권과 직결되어 있어 적법·신속·공정한 업무처리가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지방세 민원은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적·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담당공무원은 관련법령을 충분히 검토한 후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사실확인 또는 현장조사가 필요한 경우 철저한 현장확인을 통하여 신속히 대응하고, 가능한 민원처리의 법정기간을 단축하여 운영하여야 하겠다.

인터넷 시대의 도래와 더불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지방세분야의 사이버질의 등 민원의 경우도 서면질의에 준하여 관리하고 가급적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인터넷 사이트를 보강하여 지방세 민원빈도가 높은 사항을 충분히 알림으로써 납세자의 지방세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나가야 하겠다.

다. 지방세 납세홍보의 강화

21세기의 다양한 정보통신기술과 새로운 홍보기법 등을 지방세의 홍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발적인 납세협력을 유도하고 납세자가 부담한 세금은 내고장의 공공사업과 주민복지 증진에 사용된다는 점을 널리 알리어 성실납세의 풍토를 조성해야 할 것이다.

우선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행정자치부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지방세 현황 등 최신내용을 충실히 담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홍보를 강화하고, 지역 Cable TV와 뉴스 전광판 등을 이용하여 홍보를 추진함과 동시에 지역 상공회의소 등과 협조하여 지방세의 상담창구를 개설하는 등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홍보 방안도 지속적으로 강구되어야 하겠다.

아울러 현재까지의 불특정 납세자를 대상으로 하는 홍보방법과 더불어 개별납세자의 납세에 필요한 사항을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맞춤형홍보도 병행하여 추진하여 실질적으로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확보하기

위한 개별납세자에 대한 서비스차원의 홍보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세무부서에서는 지방자치단체내의 타부서나 외부 행정기관의 업무추진에 있어 지방세 관련 안내·홍보내용을 파악하고, 관련 업무별로 지방세 관련분야의 안내·홍보문안을 작성하여 해당부서에 송부하고 해당부서에서는 업무추진시 지방세 관련사항을 안내·홍보토록 협조하는 방법으로 개별안내·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우수 지방세 홍보시책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추어 시행하고, 지방세 정기분세목에 대하여는 광역 또는 전국단위의 홍보를 실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4. 세정운영의 전문성·효율성 제고

지방세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유능한 전문 지방세정인의 양성을 위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훈련 및 지방세 직무연찬회 등을 강화하면서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사기양양을 위한 노력도 기울여 나가고자 한다.

지방세담당공무원의 전문교육중 전국차원의 교육을 요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과정의 개설이 곤란한 분야의 교육은 중앙단위로 전문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지역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실무위주의 교육은 지방단위로 교육을 실시함과 아울러 회

계·부기 등 전문교육은 외부의 전문기관에 위탁하거나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교육성과를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세 직무연찬회의 경우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단위로 자체 연찬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소규모 연구모임의 육성 지원방안도 강구되어야 하겠으며, 아울러 금년도 중앙단위 지방세 업무연찬회 개최를 위한 과제발굴·자체연구 등 사전준비 노력도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또한 지방세정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지방세 전문가 집단을 육성·활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별로 각 대학이나 연구소·민간단체 등에 근무하는 지방세 전문가를 찾아 지방세와 관련된 각종 위원회 등에 위원으로 위촉하고, 지방세관련 세미나·공청회 개최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각 자치단체의 지방세 제도 운영이 보다 납세자 친화적이고 발전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나가는데 가교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다.

아울러 지방세정의 평가·환류를 통한 지방세정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공무원 및 시군구에 대하여는 정부포상과 각 자치단체장의 표창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선의의 경쟁을 통해 지방세분야의 발전을 도모해 나가야겠다.

권두언

Ⅲ. 맺는말

새 정부의 국정운영방향이라 할 수 있는 『분권형 국가운영체계』의 구축과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 자주재원의 확충을 위해 우리 지방세 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그 어느때보다도 긴요한 시점이다.

지방세의 부과·징수라는 기본적 임무를 차질없이 수행해 나가면서 탄력세율 운영과 지방세 과표의 현실화 그리고 지방소비세·지방소득세 도입 연구 등 제도개선 발

전을 함께 도모해 나감과 동시에 이 시대의 납세자와 국민이 우리 지방세정인 모두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스스로 생각하고 찾아내어 개선 발전시켜 나가야 하겠다.

금년 한해가 지방세 제도와 운영 전반에 걸쳐 도약과 발전을 이루는 뜻깊은 해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갈 것을 다짐하면서 지방세정인 모두의 건승과 발전을 기원하는 바이다.☺

